

제 목

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포털 사이트에 스크랩 허용으로 게시한 사진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

판결 요지서

□ 사건의 경과

사 건 번 호	2005가단283641
원 고	박동철
피 고	주식회사 자티전자
소 제기일	2005. 9. 15.
판결 선고일	2006. 3. 3.
쟁 점	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포털 사이트에 스크랩 허용으로 게시한 사진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
결과 (주문)	<input type="checkbox"/> 원고 승소 <input type="checkbox"/> 원고 패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고 일부 승소
참 고 조 문	

□ 판결 요지

○ 사안의 개요

1. 원고는 아마추어 사진 작가로서 2003. 10. 31. 충북 청주 톨게이트 인근의 가로수 길을 촬영한 사진(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)을 촬영하

여 2003. 11. 1. 인터넷 네이버닷컴 포토갤러리(지역, 명물) 코너(이하 이 사건 갤러리라고 한다)에 “가을 속으로”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.

2. 이 사건 갤러리에 사진을 게시함에 있어서 사진 게시자는 그 게시된 사진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, 카페, 포토데스크 등에 옮겨가는 것(이하 스크랩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)을 승낙할 수도 있고,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,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하면서 스크랩을 승낙하였다.
3. 피고는 차량항법장치(CNS) 텔레메스틱 단말기, LCD 모니터, 핸즈프리 등을 만드는 회사로서, 2004. 7. 5.경부터 2005. 9.경까지 이 사건 갤러리에 게시되어 있던 이 사건 사진을 피고 회사 홈페이지의 네비게이션 제품 홍보 이미지로 사용하였는데,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.
4. 원고는 2005. 7. 8.경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분쟁조정신청을 하면서 손해배상 200만원 및 이 사건 사진의 사용중지를 구하였으나, 피고가 사진의 사용중지에는 응하지만,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결국 조정이 결렬되었다.

○ 당사자들 주장 및 쟁점

1. 원고는 이 사진의 저작권자로서 피고의 행위를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위자료로 3,000만원의 배상을 구함.
2.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스크랩을 허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진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.

○ 법원의 판단

1.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하면서 스크랩을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갤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, 카페 등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옮기는 범위에서 승낙을 한 것으로 볼 것이

고,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.

2.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□ 판결의 의미

- 원고와 같은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스크랩 허용으로 게시한 사진에 대해서도 이를 저작권자의 승낙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밝힌 사례임.